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B/L Korea Service and its Facilitation Strategies

정윤세(Yoon Say Jeong)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
| II. 선행연구 검토 | IV.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활성화 전략 |
| III.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개발과정 및 특성 | V. 결론 |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자정부 과제로 인터넷기반의 국가전자무역망(uTradeHub)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무역의 전자화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자무역의 마지막 단계라고 불리는 선하증권(B/L)을 전자화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서비스(e-B/L Korea)'를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에 공식적으로 전자선하증권 서비스에 들어갔다. 국가적 차원에서 상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선하증권을 제도화한 것은 세계 최초이며 세계 각국이 이의 성공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한국형 선하증권의 성공은 2011년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불 클럽에 가입한 '무역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무역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향후 무역 2조불시대를 앞당길 전자무역 활성화의 시금석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국가 간 연계구축망이 부재하고, 서류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적인증을 배제하고 국내공인인증만을 취급하는 등 e-B/L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산적해 있어 실질적으로 e-Nego 서비스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Nego 또는 서면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비롯하여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과 사용상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특성을 검토하고 동 서비스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선하증권, 전자무역, e-Nego, 국가전자무역망

* 본 논문은 2010년 단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 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반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무역이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1960년 18.1%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00년 35.1%, 2005년 64.6%, 2009년 92.3%, 2010년에는 88%에 달해¹⁾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무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차원에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과 가격, 브랜드 이미지 등 상품 혹은 기업의 경쟁력이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의 거래효율성을 나타내는 거래비용의 경쟁력이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거래비용 절감지원을 통한 자국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역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앞 다투어 무역업무 처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무역자동화 추진을 위하여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한국무역협회가 한국무역정보통신(주)(KTNET)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300여 가지가 넘는 무역, 통관, 물류 관련 서류와 다양한 서비스를 전자화해 왔다.²⁾ 그 중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선하증권을 전자적 문서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유통하는 일이 전자무역을 완결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선하증권은 그 기능에 있어서 화물수령 영수증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운송계약 증거서류인 동시에 양도 가능한 권리증권으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어³⁾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소유권의 안전한 관리 및 보안을 통해 사용을 확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IT인프라 활용을 통해 전자무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자선하증권서비스 구축사업을 전자정부 과제인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사업의 한 부분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은 그간 불레로 전자선하증권 사례에서 들어난 서비스의 폐쇄성, 높은 참여비용, 상호운용성 부족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또한 전자선하증권 유통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법을 개정하여 전자선하증권을 법제화하고, 전자선하증권 발급 및 관리 서비스의 공신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노력과 수년간에 걸친 무역업계, 해운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상승원인 분석, 2009.11.12, 저자 일부수정
 2) KTNET, "전자무역서비스 개발 현황", 2008
 3) 전순환(2007), '선하증권의 기능 및 성격', 국제운송물류론, 한울출판사, pp.198-204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으며, 불레로가 가장 취약했던 사용자 확산기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에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지정되어 무역, 통관 및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전자선하증권 등록 및 관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서비스 사용자 아이디 기준으로 3만개가 넘는 무역업체, 무역서비스 유관기관, 물류업체, 선사 등에 연계되어 서비스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는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정보통신이 uTradeHub와 e-B/L KOREA를 구축하여 2009년 5월부터 공식적으로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가입회원의 수가 적고⁴⁾, 무역업체, 선사, 은행, 복합운송업체 등 사용자들의 인식부족과 사용자 지원 서비스 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선하증권을 이용한 수출서류 매입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2010년 5월 e-Nego⁵⁾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⁶⁾. 하주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국내 매입은행에서는 e-Nego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입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발행은행에서는 국가간 연계구축망이 부재하여 서면으로 전환된 전자선하증권에 의하여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수출환어음 매입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나 다른 나라에는 이러한 전자선하증권 서비스와 e-Nego 서비스가 없어서 국내은행이 전자적으로 수취한 매입서류를 종이문서로 인쇄하여 해외에 있는 개설은행으로 보내야 한다. 이러한 e-Nego 과정 또는 서면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선하증권의 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전자선하증권의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연구⁷⁾가 있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업문서 유통에 대한 공공서비스화 사례인 우리나라의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를 그간의 해외사례와 차별화하여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으로 정의하고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의의와 차별적 특성, 그리고 e-B/L Korea⁸⁾ 서비스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이에 대한 활성화 차원의 정책적,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한국무역협회에 등록된 무역업체 100,295개 중 전자무역 이용자는 19,405개(KTNET 무역자동화 서비스 가입자로서 ID기준)에 불과하다.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 안내」, 2009.01. p.17.

5) 수출환어음매입 온라인 서비스

6) 시범서비스 참여기관 및 업체를 살펴보면 하주는 현대자동차, 전자신용장에는 외환은행, 신한은행, 금융결제원, 전자선하증권은 유코카케어, 전자보험증권은 현대해상보험과 보험개발원, 전자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다. 한국무역정보통신, "uTH(uTradeHub) 현황 및 전망", 2010.02. p.14.

7) 이장숙 · 강원진(2010), "신용장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심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고찰 -e-Nego 시스템과 전자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2권 2호, pp.85~107.

8) 법무부가 전자선하증권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2009년 새로 구축한 업무처리시스템의 명칭임

II.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이론적 정리를 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차별적 특성을 설명하였다.

최석범(1997)⁹⁾은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Reinskou의 통지-확인시스템, SeaDocs, CMI, NCITD, BIMCO모델을 분석하고, 도입권고 모델로서 CMI규칙상의 운송인등록시스템을 보완하는 이중등록시스템 설정이 필요하며, 키 방식을 개선하여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도입하여 운송인은 별도의 개인 비밀키 이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1999년에는 ‘글로벌 전자무역시대에 대비한 전자선하증권의 법률적 대응’¹⁰⁾이란 연구에서 전자선하증권 유통에 선행되어야 할 법제도적 조치에 대해서 논하였다.

오원석(2001)은 ‘볼레로 전자선하증권 실용화 연구’¹¹⁾에서 전자선하증권 사용이유로 무역거래비용 절감, 오류와 누락을 방지하여 문서의 안정성 확보, 실시간 서류전달로 서류지연 예방 등을 들고 볼레로 전자선하증권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Rule Book의 정교화, 하주, 선사, 포워더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홍보하고 비싼 비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걸(2002)¹²⁾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볼레로 선하증권의 활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란 연구에서 통신수단의 발달로 볼레로 프로젝트는 이미 사업성 평가와 법률적 평가가 완료되어 선하증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보고 볼레로 선하증권의 활용을 위한 법률적, 실무적, 시스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엄윤대(2002)는 ‘전자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종류가 아니라 현행 선하증권이 갖는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일련의 시스템’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¹³⁾ 즉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혹은 통선하증권과 같이 어떤 특정 종류나 기능의 선하증권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종이 선하증권에 담긴 정보를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이며, 이것을 무역 관습이나 법률로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종이 선하증권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9) 최석범(1997),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지, 제22권 제3호, pp.423-424.

10) 최석범(1999), “글로벌 전자무역시대에 대비한 전자선하증권의 법률적 대응”, 무역학회지 제24권 제1호 p.237

11) 오원석(2001), “Bolero Bill of Lading 실용화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6권 제2편 pp.184-185.

12) 유재걸(2002), “국제무역에 있어서 볼레로 선하증권의 활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창업정보학회지, 제5권 제2호, pp.330-331.

13) 엄윤대(2002), “국제무역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 효력상의 문제에 따른 대체운송증권 활용”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우광명(2003)¹⁴)은 전자선하증권 사용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전자선하증권의 새로운 상 관습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나 기존법률의 수정 및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 였고 또한 국내외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접속으로 원스톱 서비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가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의 기능 고도화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종락·백주홍(2003)¹⁵)은 전자선하증권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서 전자선하 증권에의 도입모델을 분석하였고 관계당사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를 통한 불래로 선하증권의 기술적·법적인 문제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호신(2006)¹⁶)은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2006년 상법개정안의 검토에 관한 연구에서 전자선 하증권의 최종 목표는 전자선하증권의 이용을 종이 선하증권과 동일한 정도로 일반화하는 것이며 이는 해상운송계약의 전체 과정에서 전자적 기술의 뒷받침과 법제도의 정비가 있어 야만 실행가능하다며 국내법규와 국제법규의 조화를 언급하였으며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전 자선하증권의 실행을 위한 일부의 입법을 단행하고 그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최종적으 로 선하증권의 전체 과정에서 전자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홍진(2007)¹⁷)은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소고에서 종이 선하증권과 전자선하증권은 법적 성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법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전자선하증권 도입으로 유통성의 강화와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자 선하증권을 도입해도 종이 선하증권 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위·변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등 록기관의 철저한 보안대책과 전자선하증권 사용상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책임 문제 등도 입 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효신(2007)¹⁸)은 전자선하증권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에서 개정 상법의 전자 선하증권에 관하여 단 한 개의 기본적 조문을 두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점을 지 적하였고 이에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하였다.

안병수(2007)¹⁹)는 국내 전자선하증권의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전자선하증권은 단기간

14) 우광명(2003), "전자식 선하증권 사용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 제9권 제1호, p.340.

15) 김종락·백주홍(2003), "전자식 선하증권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문집, 제9권 제2호, p.397.

16) 송호신(2006),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2006년 상법개정안의 검토",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 pp.379-380.

17) 박홍진(2007),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제27권, pp.161-162.

18) 김효신(2007), "전자선하증권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제26권 제2호, pp.360-362.

19) 안병수(2007), "국내 전자선하증권의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4호, pp.195-196.

에 활용되기 힘든 상관습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점진적 확대와 국내 전자무역환경에 특화된 시스템의 개발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조직을 전자선하증권 등록 및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과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지원을 주장하였다.

이충배·정용균(2007)²⁰⁾은 전자선하증권의 글로벌 운용 모델을 위한 개선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에서 전자선하증권 시스템은 기술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자선하증권의 운용모델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제3의 신뢰성 있는 운영기관(Trusted Third Party)을 통한 권리등록 장치의 운영과 국제적 규범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국가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자무역플랫폼간의 연계를 통해 전자선하증권의 글로벌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진(2008)²¹⁾은 글로벌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전자선하증권 도입과 구현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e-Nego시스템의 매입서류의 전자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자문서의 해외와 유통이 가능할 때까지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자문서의 원본성 보장 및 보안장치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완용(2008)²²⁾은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하증권 규정에 관한 고찰에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상세한 절차규정은 입법체계상 모두 전자선하증권 시행규정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등록기관이 마련하게 될 업무준칙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행자인 운송인이 등록기관에 발행의뢰를 하면서 양자간에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등록기관의 업무준칙 중에서 전자선하증권 발행절차에 관련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였다.

조상현(2008)은 전자무역거래를 위한 권리이전 및 유통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자무역 단일창구인 uTradeHub를 통해서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및 등록, 유통 모델을 검토하면서, 특정국가 아닌 대다수 국가들이 전자선하증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통일법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의 시도를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았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선하증권을 전자화하고 국내에서 도입, 유통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점진적 도입 주장,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TP)에 의한 권리등록 및 관리를 주장하고, 종이 선하증권으로의 전환을 통한 편의성 제고, 국내입법과 관련된 절차 및 업무준칙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실무적인 내용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을 타국

20) 이충배·정용균(2007), “전자선하증권의 글로벌 운용 모델을 위한 개선방향과 과제”,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3호, pp.179.

21) 이상진(2008), “글로벌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전자 선하증권 도입과 구현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pp.212-213.

22) 정완용(2008),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하증권 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 제30권 제1호, pp.111-112.

에 비해서 앞서서 입법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유통모델의 수용, 국제적 인증의 필요성, 국제적 모델법 또는 통일법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국가 전자무역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서비스로 개발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은 2010년 상반기에 하주인 현대자동차, 운송선사인 유코카캐리어, 외환은행 등이 참여하여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내용을 참고하고, 전자선하증권 관련 법령, 현재 구축된 e-B/L Korea 서비스 시스템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특성을 연구하고 실무적으로 전자선하증권이 발행, 등록 및 유통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관련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내용 요약
최석범(1997)	▶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를 위한 모델로서 CMI규칙상 운송인 등록시스템을 보완하는 이중등록시스템의 설정과 운송인의 별도 비밀키 필요성 주장
오원석(2001)	▶ 불레로 전자선하증권 실용화 과제 정리
유재결(2002)	▶ 불레로 선하증권의 활용상 문제를 법률적, 실무적, 기술적으로 나누었고 연계를 통한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 필요
우광명(2003)	▶ 특별법의 제정이나 기존법률이 수정 ▶ 국내외 시스템간의 윈스톱서비스를 위한 연계 및 고도화 필요
김종락·백주홍(2003)	▶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법적인 문제들의 지속적인 보완필요
송호신(2006)	▶ 전자적 기술의 뒷받침과 국내법규와 국제법규의 조화 검토
박홍진(2007)	▶ 종이선하증권과 전자선하증권이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강조 ▶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
김효신(2007)	▶ 전자선하증권 유통을 위한 특별법 필요 주장
안병수(2007)	▶ 점진적 확대적용 및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TP)에 의한 운용 필요
이충배·정용균(2007)	▶ 전자무역 플랫폼간의 연계를 통한 유통성 확보 주장 ▶ 전자선하증권의 운용 모델의 다양화를 통한 글로벌화
이상진(2008)	▶ e-Nego시스템의 매입서류의 전자화 필요 또한 전자문서의 유통이 가능할 때까지 전자문서의 종이문서로 전환기능 필요
정완용(2008)	▶ 상세한 절차규정을 등록기관의 업무준칙에서 정할 것을 주장
조상현(2008)	▶ 국가간 법적 효력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 컨벤션 등 통일법 필요

Ⅲ.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개발과정 및 특성

1. 전자무역서비스의 일부로 개발

무역규모의 확대와 이에 따라 급증하는 물류비 문제 측면과 글로벌 거래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공급체인관리(SCM)의 납기 단축 요구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무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전자정부과제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서비스 시스템구축을 시작하여 2008년에 전자무역을 기반으로 무역업무 전반의 단절없는 처리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uTradeHub라고 명명된 전자무역 Single Window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uTH의 특징은 사용자와 서비스 기관이 시스템 내에서 N대N 방식으로 연결되어 업무가 일괄 처리된다. 무역업무는 그 본질상 외국과의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자무역의 대상 범위를 해외까지 연계, 확대해야 그 효과가 발휘된다. UN/ECE와 UN/ESCAP는 전자무역의 진화 단계를 지리적 영역과 특징에 따라 Pre-Single Window Portal, Single Window Portal, Regional Portal, Global Portal 순서로 구분하였다.²³⁾

현재까지 해외의 기관들이 추진했던 전자선하증권 프로젝트나 사업은 대부분 단순히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국한되었으며²⁴⁾, 볼레로²⁵⁾는 SURF(Settlement Utility for Managing Risk and Finance)라는 부가가치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화환무역 결제를 위한 서류일치를 자동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중앙 메시징 플랫폼(CMP)과 권리등록기(Title Registry)와 상호작용하여 UCP 600과의 일치성 심사를 하는 기능을 갖추었다.²⁶⁾ 한국의 전자선하증권 시스템은 볼레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진화한 형태의 국가적 전자무역시스템인 uTradeHub의 일부로 개발되었다.

1) 전자무역서비스 개요

우리나라 국가전자무역서비스는 마케팅에서부터 외환, 결제, 요건확인, 물류, 통관 등 무역

23) 윤수영(2010), “한국 전자무역의 글로벌 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1호, pp.3~33.

24) 미국무역간소화위원회(NCITD) 전자선하증권, SeaDocs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함.

25) 선하증권에 대한 전자화 는 1970년대 스웨덴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1990년대부터 국제적인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1988년 CMI(국제해사법위원회)가 운송중인 화물의 권리에 대한 전자적 이전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0년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CMI규칙’으로 채택하였다. 그 후 CMI규칙을 근간으로 UN/ECE를 중심으로 전자선하증권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것을 1999년 9월에 상업화하여 출범한 것이 볼레로 선하증권이다.

26) <http://www.bolero.net/downloads/surf.pdf>, 2003. 11. 8

업무 전반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무역업무 단일창구(Single Window)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2) uTradeHub의 특징

(1) 인터넷방식의 One-Stop 전자무역 서비스

uTradeHub는 마케팅에서부터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무역 업무를 단절없이(seamless) 처리할 수 있는 무역업무처리 시스템이다.

(2) 무역절차에 따른 업무처리 지원

My Task기능을 통하여 모든 수출입 건에 대해 계약서 작성부터 대금지급까지 무역절차의 진행상태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To-Do Task가 표시되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된다.

(3) 업무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

uTradeHub를 통해 모든 무역업무를 일괄처리하므로 오프라인의 절차가 없어지고 인터넷 기반의 업무 처리로 인해 업무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특히 한번 입력한 정보는 uTradeHub에 그대로 저장되어 다른 문서 작성시에 활용할 수 있어 동일한 정보 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

(4) 사용자별 맞춤서비스

“My Trade”를 통해 각각의 이용자에 적합한 최적의 업무영역을 설정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메뉴설정 및 업무현황 정보, 모니터링 등 자신만의 업무영역(Work Place)을 제공한다.

(5) 안전한 거래 보장

정보 및 문서는 권한 있는 사용자만 접근, 활용할 수 있어 거래 안전성이 확보되고 위·변조나 금융사고 등의 걱정이 없다. 또한 전자문서의 진정성 및 제3자 유통성 확보를 통해 동일문서의 중복제출 및 종이원본의 제출이 불필요하다.

3) uTradeHub 서비스 구성

uTradeHub는 마케팅포털, 은행포털, 무역포털, 통관포털, 물류포털, 전자문서보관소, 중계시스템 및 보안인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uTradeHub 구성도



자료: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활성화 및 글로벌화 전략', 2008.

4) uTradeHub 현황

(1) 무역포털(uTrade)

마케팅, 상역, 외환, 통관, 물류, 결제까지 모든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Workplace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포털을 통해 선적요청(S/O),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O/C), 적하보험, 환어음 등 유관기관 방문없이 서류 제출 및 서류 접수가 가능하며, 은행이나 수출입 관련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복잡한 무역 업무를 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있다. 무역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는 신용장 개설²⁷⁾ 및 통지, 선하증권²⁸⁾, 환어음매입²⁹⁾, 계산서발행, 요건확인업무³⁰⁾, 원산지 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의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무역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전자화하여 수출자가 수출을 하고 나서 거래조건에 따라 신용장 등에서 요구하는 제시서류를 전자적으로 은행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수출서류 전자매입서비스(e-Nego) 시

- 27) 전자신용장(e-L/C) :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조건변경, 수수료 등의 업무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매입, 양도 등의 신청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 28) 전자선하증권(e-B/L) : 운송사로부터 전자적으로 B/L을 수신하고, 그 소유권은 Title Registry에 등록되며 원본은 전자무역문서보관소에 보관되므로 B/L이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29) 전자수출환어음매입(e-Nego) : 네고관련 문서의 전자화 및 네고서류 자동화를 통해 수출업체가 관련기관 및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uTradeHub를 통해 Nego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0) 수출입요건확인 : 무역업체와 요건확인기관 간에 발생하는 승인, 추천 등의 서류상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uTradeHub는 마케팅에서부터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무역업무를 단절없이 처리되고 있다.

(2) 물류포털(uLogis)

수출입물류업체의 업무기능 강화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물류업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로 연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출입화물 통합업무처리 서비스로 서식 표준화를 통한 웹서비스 및 적하목록취합서비스(MFCS)³¹⁾를 이용한 화물정보와 실시간 화물진행정보제공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는데 주요 서비스로는 입항정보 및 적하목록취합서비스, 보세운송 신고, 반출입 신고, 입출항 보고, 화물인도지시서³²⁾ 발급, 수출입 물류비용 수납³³⁾ 등이 있다.

(3) 은행포털(uBankers)

전자신용장(e-L/C)의 유통 및 e-Nego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포털이다. e-Nego 시스템지원을 통해 uTradeHub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장업무에 필요한 기반 데이터 입력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e-L/C 유통, e-Nego 지원업무³⁴⁾, 수출입대금 결제 등이다.

(4) 통관포털(uCustoms)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위한 수출입 통관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로는 수출입 신고, 환급신청, 통관고유번호신청, 통관관련 정보조회 등이 있다.

(5) 마케팅포털(uTrade Search)

uTradeHub상에서 무역서비스뿐만 아니라 마케팅 정보까지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
- 31) MFCS : 적하목록취합(조회)서비스는 수출입화물의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세관에 전송하는 서비스로 적하목록 제출 의무자인 선사 및 항공사를 지원, 대행하여 취합된 적하목록을 세관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32) 화물인도지시서(e-D/O) : 기존 수입화물의 인도를 위해서는 화물인도지시서(D/O),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신청서, 보세운송요청동의서, 자기운송신청서 등 4종 업무를 직접 방문을 통한 처리가 불가피 했으나 e-D/O 서비스를 통하면 사무실에서 신청, 발급하고 실시간으로 승인 및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33) 수출입물류비용 전자수납(e-T/B) : 수출입업무와 관련한 청구서와 납부증빙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전자수납 체계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화주, 선사, 항공사, 온라인 이체,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표 발급에서부터 보세구역의 화제보험료 영수증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자수납이 가능하다.
- 34) e-Nego 지원업무 : uTradeHub를 통해 Nego 관련 문서의 전자화 및 네고 서류 자동화가 가능하며, 효율적인 신용장 잔액 관리와 e-L/C 및 D/A, D/P, O/A 매입을 지원하고 있다.

구축되었으며, 국내 TradeKorea, KITA.net, EC21, ECPlaza 등 무역전문사이트를 통한 품목별 및 국가별 해외시장 정보를 비롯하여 바이어, 기업정보 등 다양한 거래알선 정보와 전시회 및 무역실무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글로벌포털(uGlobal)

전자무역서비스를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파트너사와의 B2B정보를 작성,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역 및 물류업체의 무역자동화 혁신을 실현하고, 무역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해외 파트너사와의 전자문서 교환(18종 문서) 및 글로벌 포워더를 위한 본·지사간 전자거래 지원 및 전자문서 송수신, 데이터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KINET 인프라를 활용한 부가서비스 제공(예: MFCS와 연계한 적하목록 신고, 철강재 사전수입신고) 등이다. 또한 글로벌포털은 범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연맹(Pan Asian e-Commerce Alliance), 아시아-유럽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연맹(Asia Europe Alliance for Paperless Trading) 등 국제간 전자무역 사업자간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차별적 특성

1) 상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규정 원비

과거 불례로 전자선하증권은 적용국가의 법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Rule Book이라는 형태의 일종의 사적 계약서에 수출업자, 수입업자, 용선자, 해당 운송 및 무역 관련된 수출업자 은행, 수입업자 은행 등이 서명함으로써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우리나라가 도입한 한국형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상법에서 종이 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발행의 요건, 관리, 유통 등에 관한 법규정 및 시행령, 업무준칙을 마련하여 시행함³⁵⁾으로써 제3자에 유통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35) 상법 제862조(전자선하증권) ①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선하증권은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②전자선하증권에는 제853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서 지금까지 존재해 온 전자선하증권과 차별화된다.

2) 세계 최초의 국가적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최초로 관련 법 규정³⁶⁾을 완벽하게 갖추고 전자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인프라³⁷⁾를 갖춘 것 이외에도 국가가 등록기관 지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해 놓고, 이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³⁸⁾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점에서도 외국의 타기관이 추진한 전자선하증권 서비스와 확연히 구분된다. 과거 불레로나 일본의 TEDI Club이 시도한 전자선하증권이 크게 확산되지 못한

- 36)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시행령(제정 2008년 6월 20일, 대통령령 제 20829호) 제2조(정의)에서 1.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2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2.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선하증권 권리등록부”(이하 “전자등록부”라 한다)란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및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에 관한 기재 등을 위하여 등록기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 4.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란 등록기관으로부터 최초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받은 자 또는 전자선하증권의 양수인(讓受人)을 말한다. 6.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이하 “발행등록”이라 한다)이란 등록기관이 운송인의 신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등록부의 폐쇄”란 등록기관이 전자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삭제·변경·추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 37) 상법 862조 ⑤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제3조(등록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862조제1항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가 12명 이상일 것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 나.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라. 무역관련 금융업무나 해운물류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3. 재정능력: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추어 것
 - 가. 2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負債)를 뺀 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 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
 4.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 것
 - 가. 운송인, 송하인(送荷人) 또는 수하인 등 등록기관의 이용자가 전자선하증권의 등록, 배서, 양도, 제시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 나. 전자선하증권의 송수신 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선하증권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 다.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 라. 그 밖에 전자선하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5. 제4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절차와 방법, 제13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등록기관의 업무준칙을 갖추어 것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술적 이유나 권리 사용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유 중에 하나는 전자선하증권이 법적으로 유효한 공적인 서류가 아니라 사적인 계약에 의해 유효성이 인정되는 문서이므로 볼레로의 Rule book에 서명하지 않은 제3자가 이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항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3) 국가전자무역서비스의 일환으로 개발

우리나라 상법 해상편 제862조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법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과 배서, 양도, 권리이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물리적인 처리시스템은 국가전자무역서비스 시스템에 물류서비스 포털인(u-logis) 내에 위치하여 상법 입법이전에 구축하여 서비스 사용자인 무역업체가 단일창구 하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말에 법무부의 요청으로 국가전자선하증권 등록 및 유통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고 강화된 보안시스템 하에 독립적으로 분리, 구축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e-B/L Korea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고도화한 바 있다. 물리적으로는 전자무역시스템과 분리, 독립하여 구축하였지만 사용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자무역서비스와 SSO(단일로그인 방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사용자 확보

한국형 선하증권서비스가 볼레로 서비스와 가장 차별화된 특징은 이미 사용자 풀을 가지고 있는 전자무역서비스에 e-B/L, e-Nego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전자무역서비스 이용자는 2010년 말 사용자 아이디 기준으로 46,000개에 달한다. 물류, 통관, 관세환급, 요건확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금융서비스, 마케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자무역을 위해 개발한 전자문서만 해도 500종이 넘는다. 1991년에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을 설립한 이래 무역절차간소화와 자동화를 통해서 많은 무역서비스를 전자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무역절차상 중요도가 높은 서비스의 대부분이 전자화되었다. 통관 서비스는 100% 전자화 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의 경우에도 신청자가 전자적 문서를 요구하거나 종이문서를 요구하거나에 상관없이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자무역시스템인 uTradeHub에 전송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자무역서비스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도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고객확산에 실패한 Bolero 서비스의 경우에는 잠재 사용자를 하나하나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3.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상업적 특성

1) 기존 전자무역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e-B/L Korea의 확장성 확보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활용이 가능한 e-B/L Korea를 개발되어 기존 전자무역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제품의 확장성을 확보함으로써 제품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통관, 물류, 결제프로세스의 유기적인 통합처리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개발되어 모든 무역프로세스를 윈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으므로 기업차원에서 비용절감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은행의 서류심사자동화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전자화는 외국환 거래은행에 있어서도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BIS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은행의 무역서류 수취 및 심사를 전자화, 자동화하는 전자선하증권 및 e-Nego 서비스는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이다. 따라서 국내 은행뿐 아니라 외국계 은행을 위한 ASP서비스를 이미 개발하여 은행들의 무역업무처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은행들의 활용 확산이 용이하다.

3) 기업의 e-Biz화와 연계된 선하증권 자료의 활용방안

수출입기업의 e-Biz화와 연계된 자료 활용방안이 강구될 경우 상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무역 ASP보급사업과 연계된 자료의 활용방안이 강구된다면 기업차원에서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 측에서의 수요가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4)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무역네트워크와 연계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독자 구축한 전자무역 네트워크인 Global Trade Automation(GTA)과 연계된 국내 통합전자무역플랫폼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GTA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SCM 차원에서 구축한 것이므로 국가 전자무역인프라의 역할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에 GTA의 노하우와 국내 통합전자무역플랫폼의 국가 전자무역인프라의 역할이 융합된다면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성공성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5) 선하증권 외의 환어음, 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전자화 도모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전자화뿐만 아니라 완전한 전자무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환어음과 보험증권도 전자화되어야 한다. 즉,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선적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만 국제적인 전자대금결제 가능한 실질적인 전자무역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6) 전자유가증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공인인증업무의 구축

전자유가증권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통 상에 필요한 공인인증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국외에 전달되는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상호인증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 협약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선적서류가 국내외로 전달되고 유통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표준 및 전자서명의 상호인증 등에 대하여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관련 모든 당사자가 모두 이를 수용하여야만 가능하다.

7) 전자유가증권의 효력부여를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전자환어음, 전자보험증권 등의 전자유가증권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의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역거래에서 해상운송의 선하증권은 수출국 선박회사에서 발급하더라도 수입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수입국 주요 매매당사자와 연계되어야 하므로 전자선하증권의 해외활용에 저해되는 상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³⁹⁾ 첫째, 현행 상법 하위 규정인 「전자선하증권 시행에 관한 규정」상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시 우리나라 공인전자서명만을 허용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해외사용자는 전자선하증권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진 방안으로 해외 거래당사자와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 합의한 서명 방식도 허용하는 취지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호주와 미국의 입법에서는 당사자들의 자치적 합의에 맡기고 있다. 둘째, 전자환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용장과 선하증권은 전자적 유통의 국내의 제도적 기반이 제정되었으나 환어음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자적 활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005년에 약속어음의 전자적 유통

39) 윤수영(2010), “한국 전자무역의 글로벌 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1호, p.28.

을 위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전자환어음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8) 신뢰할만한 제3자(TTP)에 의한 전자문서저장소(Repository)의 운용

전자서명에 대한 일반의 인식부족과 대면방식의 종이서류 관행 고수로 전자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아 법률적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원본효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활용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자전자증권 및 e-Nego 관련 전자문서를 TTP인 KINET이 관리하고 있다.

9) 전자공증서비스의 도입

우리나라의 전자인증제도와 전자인증법의 측면에서 제도적, 법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⁴⁰⁾ 첫째, 현재 상충되는 법규정과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간 업무의 공유와 일원화를 통해 국가 전자인증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주무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이 관련법 체계와 정책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전자서명의 기술표준 문제와 관련하여 좀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지 디지털 서명만이 유효한 전자서명으로 한정짓고 있는데, 이는 암호기술의 빠른 발전과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자칫 전자서명법은 기술 중립주의가 아닌 특정 기술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특정 기술주의가 아닌 기술 중립주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호인정과 상호인정규정을 둘 수 있다. 상호인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이라는 테두리에 얽매어서 타당한 신뢰성을 갖춘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가별로 상이한 전자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국제적인 통일규범과 기술표준에 대하여 수용의 확대를 위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과 시점확인 등이 가능한 전자공증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즉, 전자계약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의 확인, 거래내용의 증명, 시점확인 등 전자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세금계

40) 김선광 · 김종훈(2009), “한중 전자서명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4호, pp.70~71.

산서 등과 같은 일정기간 서류보관을 개별기업에서 부담하지 않고 보관소가 서류를 보관하고 자료 제출 시에 관련당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은 전자계약시의 승낙의 도달시점, 보험계약체결시점, 인터넷세금 납부시의 납부시점, 전자입찰시 입찰참가시점 등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IV.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활성화 전략

1.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및 해상화물운송장 발급이전단계인 선적요청, 선적지시, 본선수취 등의 절차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토록 유도해야 한다. 이미 서비스는 개발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관행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발급시 전담 관리기관의 권리등록소에 권리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해야 한다. 즉, 사용자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권리등록소에 등록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국내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체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등록시스템과 전자무역인프라의 연계·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적 전자무역 프로세스의 구현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시범사업(pilot project)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 중심의 초기수용자군(earlier adopter)을 확보하여 전자무역 도입 분위기를 시장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

1) 물류문서 연계 및 전자화 처리 촉진전략

과거에는 물류문서의 발급이전 단계부터 발급 및 활용단계까지 전화, FAX, 방문 등의 Off-Line 처리가 관행화 되어 왔는데, 인터넷기반의 국가전자무역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자무역의 완성단계라 할 수 있는 전자선하증권(e-B/L) 및 e-Nego 서비스까지 가능해졌다. 사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협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 및 운영이 바람직하다.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전담관리자 후보, 선사, 포워드, 수출상, 은행, 보험사 등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전자유통에 관련된 주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의 확인 및 조정이 필요하다.

2) 외국 사용자에게 대한 지원 강화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및 전자적 방식의 수출서류매입 서비스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와 무역거래가 많은 주요 국가에 대해서 전자무역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는 국내에서는 전자적으로 문서처리가 가능하나 해외로 문서를 보내기 위해서 다시 종이문서로 인쇄해서 특송 등으로 해외은행에 관련서류를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무역 능력개발 과정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전자선하증권 및 전자무역서비스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개도국과 주요 무역상대국의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해외와의 전자선하증권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적 통합 또는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비한다. 시범사업 단계에서, 또는 특정 국가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구축·보유한 전자선하증권 권리등록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3) 연계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적 전자무역 프로세스의 구현전략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권리등록시스템을 기구축 보유하고 있는 전자무역인프라와의 효율적인 연계·통합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적 측면은 물론, 실질적 운용측면에서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중앙등록시스템을 전자무역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단절 없는 전자무역 프로세스의 구축이 가능하다. 다만, 이 중앙등록시스템의 운영주체가 전자무역플랫폼이나 전자문서보관소의 운영주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⁴¹⁾하다.

4)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국내외 유통체계 확보전략

세계 주요국가 정부 또는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빠른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가와 우선적으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민간 합동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호주 등 전자선하증권 인정국가와의 교역에서 우선적으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을 유통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

41) '전자문서등록저장소'는 유가증권 이외의 모든 문서를 DB화하여 문서전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등록소도 병행할 경우에는 문서전달체계와 권리증권 유통시스템 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됨

며, BOLERO나 TEDI 등 기존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모색해야 한다.

5) 전자선하증권 시범사업(pilot project) 추진전략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시범사업을 이미 현대자동차와 외환은행, 유코카캐리어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e-Nego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다. 전자무역서비스의 유용성과 성과를 널리 홍보하여 대기업 그룹 중심의 초기수용자군(earlier adopter)을 확보하고 조기에 시장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2.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변형문제

전자무역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전자선하증권의 변형에서 기인한 책임문제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이후 변형이 발생한 경우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및 양도 등은 제3자인 등록기관을 이용하여 서류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변형에 대비한 이용약관이 마련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변형이 일어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수익자 입장에서 변형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e-Nego 시스템에 의한 매입이 이루어진 경우 불일치에 대한 책임이 수익자에 전가될 수 있다.

2) 전자선하증권의 제시 이후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

제시 이후 전자선하증권의 변형은 해외에 있는 발행은행 등이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이 수익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거절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책임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전자선하증권 변형으로 발생한 발행은행의 대금지급 거절시 책임을 밝히고 각자의 책임의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다.

3) 서면전환에 따른 전자선하증권의 변형

전자선하증권의 서면전환은 전자선하증권이 e-Nego 시스템을 통하여 매입은행에 의한 환

어음의 매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매입은행의 입장에서는 매입을 승인한 이후 자동으로 서면전환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서면 전환된 전자선하증권의 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e-Nego 과정에서 변형에 기인하여 불일치가 구성되어 발행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매입은행이 화주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시될 수 있다.

3.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변형 해결방안

전자거래의 특성상, 변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만약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류의 PDF화

수출업자의 최초 입력자료인 상업송장과 수입업자의 최초 입력자료인 전자신용장을 PDF화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비교하여 변형된 부분을 찾아 수정 보완함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용약관의 통일화

전자선하증권의 운용 사이트인 UTH와 e-B/L KOREA의 이용약관을 통일하여야 한다. 운용기관의 특성상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UTH의 이용약관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정한다면 이용자는 전자라는 수단이용에 따른 불일치요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책임관계도 명확히 할 수 있다.

3) 새로운 심사기준 도입

전자거래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로 전자라는 특성과 연계된 전자선하증권의 변형 가능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방법의 심사기준이 신용장 방식에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eUCP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형에 기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 절차를 확립하고 책임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업무절차가 신설되는 등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전자선

하증권의 제시 및 심사가 원활해져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며,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전자신용장 거래의 실현이 앞당겨질 것이다.

4) 출력방법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출력방법은 2가지가 가능하다. 무역업체가 출력하는 경우는 영사송장 등 전체 NEGO서류가 e-Nego 되지 않는 경우이며, 은행에서 출력하는 경우는 전체 NEGO서류가 e-Nego가 되는 경우이다. NEGO 출력시 소유권 정보가 어느 시점에서 전달되는지와 NEGO 출력시 선하증권의 수정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화주가 재발급 요청이 가능케 되어 있고, NEGO 진행시 원본을 출력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다. 은행 심사시 출력하면 Offline 처리된다.

원본의 이중출력 방지가 중요하다⁴²⁾. 현재 출력된 선하증권은 인위적으로 복원 할 수 없다. 출력이 프린트 문제로 에러(Error)가 발생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출력 중, 프린터 잼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에러(Error)에 대비하여 솔루션을 도입,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선하증권 출력을 은행에서 해야 하는데 선사도 COPY 등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사가 사본을 출력/보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또한 화주가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선사가 원본을 출력하여 화주에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선사도 원본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민사소송 등이 있기 때문에 COPY가 필요하다. 또 선사가 원본을 출력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존 프로세스도 살려야 한다. 선사가 원본 출력시에는 전자선하증권이 아닌 기존의 오프라인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한다. 선사와 포워더간의 거래에는 선사가 선하증권을 출력해야 포워더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포워더에게 어떻게 선하증권을 전달할 수 있는가? UTH 사용자, 미사용자 구분이 선사에서 있어야 한다. UTH를 사용하려면, 화주, 선사, 포워더가 모두 UTH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워더가 UTH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UTH 역할이 KL-NET 역할과 같다. 화주는 Check B/L을 보지 않는 프로세스가 있다. 이전사례를 활용하여, 계산서 문서 등도 EDI 문서 등 KL-NET 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5) Data관리

상법 개정에서 선하증권에 로고, 이름 뒤에도 회사 주소(본사소재지)가 들어가도록 추가되

42) 한진해운은 15%가 수정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중 출력방지가 수정기능 처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있다. 선하증권 양식통일시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전자선하증권 Numbering 등은 선사마다 틀리고, 약관도 마찬가지로다. 전자선하증권 Data는 Database화 되어야 한다. Data 관리는 UTH, 선사간 등은 어떻게 관리될까? Data관리는 UTH에서 관리하며, 선사도 내부에 발행된 선하증권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존의 관세청 MFCS 정보 등이 있다. 선사의 선하증권 정보와 관세청의 MFCS정보를 차례로 연계하면 된다.

6) 수수료

일반적으로 NEGO 서류상 B/L 3통이 한 SET이다. 화주 1통, 은행이 2통을 소지한다. 이 경우 은행에 NEGO가 가능한지 여부는 오프라인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선하증권 정정시, 재발급일 때에는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전자시스템에서는 재발급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선하증권의 정정을 받아 줄 수 없는 경우와 재발급 수수료 징구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은행에서 correction이 발생되면 현재는 은행에서 correction만 찍어서 해외로 송부하는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하주가 수정된 정보로 S/R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이를 은행에서 수정하고 그 표기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UTH 메뉴 중에 선하증권 재발급 메뉴가 별도로 구성될 것이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4.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확산을 위한 향후 과제

1) 글로벌 인증의 문제

상법 시행령은 화물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전자선하증권의 안전한 유통 및 이전을 위하여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안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일 전자선하증권 유통관리시스템이 해킹되어 화물이 유출된다면 무역에 큰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의 활용을 법제화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지만, 전자선하증권은 그 서류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서류는 해외로 유통되어야 하며, 반대로 해외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이 국내 수입업자 손에 들어와야 화물이 양도될 수 있다. 즉, 선하증권은 태생적으로 글로벌 유통을 전제로 생성되어 살아서 움직이는 서류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유통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이 양수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은 법령의 초안을 만들 때부터 제기해 왔으나 입법 상에 삭제된 채로 시행령이 확정되어 공표되었다. 시행령의 문구대로 해석하면, 특별히 외국인의 자격여부, 화물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므로 선하증권 소유자가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양도를 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문제는 보안성을 문제삼아 공인전자서명을 붙이고 조항별로 실무적으로 파악해 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공인전자서명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은 전자선하증권의 글로벌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2) 연계를 위한 지원의 문제

현재 전자선하증권을 이용할 수 있는 중앙의 서비스 시스템은 이미 완성이 되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전자무역서비스와 분리하여 추가개발을 완료하고 전자무역서비스와 SSO로 연계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다. 하지만, 서비스 사용자인 무역업체, 선사, 은행과의 연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무역업체가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자체적인 무역처리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WEB을 통해서 uTradeHub에 접속하여 전자무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둘째로는 무역서비스솔루션을 통해서 uTradeHub에 접속하여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주로 자체적인 무역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무역관련 시스템을 자체 서버에 있는 무역서비스솔루션을 통하여 허브 시스템과 접속함으로써 자체에서 생성한 데이터나 문서는 자체 시스템에 보관할 수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 연계방법은 대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체적인 무역처리시스템이나 자체적인 SCM망을 갖추고 통합된 시스템 환경 하에서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uTradeHub와 자사 시스템 간에 web service라는 연계 기술을 통하여 연계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체 시스템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uTradeHub에 있는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전자선하증권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중 어떠한 형태로든 전자선하증권시스템에 연결되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무의 특성상 전자선하증권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화물의 이동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우는 중소하주보다는 이미 전자무역과 기업내부 ERP와 SCM망을 갖춘 대하주인 경우가 많다. 즉, 대기업에 있어서 전자선하증권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의 전자선하증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Legacy 시스템과 전자무역서비스망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전자선하증권을 확산시키는데 있어서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우선 사용 건수가 많아 파급효과가 크며, 대

업이 이용하기 위해서 선사나 은행에 시스템적인 준비를 요청할 경우 선사나 은행이 이를 거절하거나 연기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무역거래량이 많으므로 선사나 은행의 영업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선하증권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는 대기업을 설득하여 전자선하증권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 전자선하증권을 조기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3) 전자무역종합 솔루션 보급의 문제

앞에서 언급한 전자무역서비스 연계 및 이용방식에 있어서 둘째로 언급된 중견기업에 대한 연계를 위한 솔루션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직 전자선하증권과 관련된 개발이 끝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문서의 유통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3월말에 인터넷 웹포털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e-B/L Korea 서비스 고도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중견기업들이 솔루션을 이용해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자무역솔루션에 e-L/C, e-B/L, e-Nego 기능이 추가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4) 사용자 인식의 문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전자선하증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선사의 선하증권발급시스템으로부터 선하증권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인터넷선하증권(종이로 발급한 선하증권의 내용을 온라인을 통하여 통지해 주는 것으로 선하증권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나 유통성은 없으나 실시간으로 선적정보를 받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체들은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도입 초기에는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 전반과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업문서 유통에 대한 공공서비스화 사례인 우리나라의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를 그간의 해외사례와 차별화하여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으

로 정의하고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의의와 개발과정, 차별적 특징, 상업성 확보방안,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확산을 위한 향후과제 등을 점검해 보았다.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이 타 서비스와 차별적인 특징으로는 첫째, 상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완비하였고, 둘째, 세계 최초의 국가적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셋째, 국가전자무역서비스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다수의 고객을 이미 확보하였다.

또한 상업성 확보전략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기존 전자무역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e-B/L Korea의 확장성을 확보하였고, 둘째, 은행의 서류심사자동화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되었으며, 셋째, 기업의 e-Biz화와 연계된 선하증권 자료의 활용이 가능해 졌다. 넷째,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무역네트워크와의 연계도 가능하며, 다섯째, 선하증권 외의 환어음, 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여섯째, 전자유가증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공인인증업무를 구축하였다. 일곱째, 전자유가증권의 효력부여를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도 끝냈으며, 여덟째, 신뢰할만한 제3자에 의한 전자문서저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자공증서비스도 도입하였다.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활용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물류문서의 연계 및 전자화 처리 촉진전략과 둘째, 물류문서 발급시 전담관리기관의 시스템 구축 및 운용전략, 셋째,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등록시스템과 전자무역인프라의 연계, 통합,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전자무역 프로세스의 구현전략, 넷째, 권리등록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및 해상화물운송장의 국내외 유통체계 확보전략, 마지막으로 전자선하증권 시범사업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함도 밝혔다. 첫째,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이후 변형이 발생한 경우, 둘째, 전자선하증권의 제시 이후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 셋째, 서면전환에 따른 전자선하증권의 변형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서류의 PDF화, 이용약관의 통일화, 새로운 심사기준의 도입, 출력방법의 다양화, Data 관리방법, 수수료 문제의 해결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로 첫째, 글로벌 인증의 문제, 둘째, 연계를 위한 지원의 문제, 셋째, 전자무역종합솔루션 보급의 문제, 넷째, 사용자 인식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 전순환, '선하증권의 기능 및 성격', 국제운송물류론, 한울출판사, 2007.
- 김선광, 김종훈, "한중 전자서명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4호, 2009. 12.
- 김종락·백주홍, "전자식 선하증권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문집, 제9권 제2호, 2003.
- 김효신, "전자선하증권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제26권 제2호, 2007.
- 박홍진,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제27권, 2007.
- 송호신,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2006년 상법개정안의 검토",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 2006.
- 안병수, "국내 전자선하증권의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4호, 2007.
- 엄윤대, "국제무역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 효력상의 문제에 따른 대체운송증권 활용"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오원석, "Bolero Bill of Lading 실용화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6권 제2편, 2001.
- 우광명, "전자식 선하증권 사용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 제9권 제1호, 2003.
- 유재걸, "국제무역에 있어서 블레로 선하증권의 활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창업정보학회지, 제5권 제2호, 2002.
- 윤수영, "한국 전자무역의 글로벌 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1호, 2010.
- 이상진, "글로벌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전자 선하증권 도입과 구현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2008.
- 이창숙·강원진, "신용장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심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고찰 -e-Nego 시스템과 전자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2권 2호, 2010.
- 이충배·정용균, "전자선하증권의 글로벌 운용 모델을 위한 개선방향과 과제",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3호, 2007.
- 정완용,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하증권 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 제30권 제1호, 2008.
- 최석범, "글로벌 전자무역시대에 대비한 전자선하증권의 법률적 대응", 무역학회지 제24권 제1호, 1999.
- 최석범,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지, 제22권 제3호, 1997.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상승원인 분석, 2009.11.12.
- 전자무역추진센터, 「uTradeHub BPR/ISP 최종보고서」, 2004. 4.

한국무역정보통신, “uTH(uTradeHub) 현황 및 전망”, 2010. 2.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 안내」, 2009. 1.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 개발 현황”, 2008

<http://www.bolero.net/downloads/surf.pdf>, 2003. 11.

ABSTRACT

A Study on e-B/L Korea Service and its Facilitation Strategies

Yoon Say Jeong*

Korea has accomplishe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ingle Window for Paperless Trade. Since 1991, it has developed Trade Automation Service System based on EDI technology. In 2003,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jointly began to set up National Paperless Trade Service(e-Trade Service) as one of the e-government projects. In 2008, they commenced the uTradeHub Service which was equipped with Internet based e-B/L and e-Nego service systems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To facilitate the service Korea amended its e-Trade facilitation Act and Commerce Law by 2007. At the end of 2011, Korea historically recorded its trade volume of 1 trillion US dollars and joined '1 trillion trade club' as the 9th member country since the country had started international trade less than five decades ago. A successful rolling out of the e-B/L and e-Nego service will substantially reduce the transaction costs of trading businesses and accelerate the activation e-trade services.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examine 'e-B/L Korea' service and its facilitation strategies as well as identify obstacles to utilize the 'e-B/L Korea' service. The paper reviewed and analyzed Korea's Paperless trade system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e-B/L Korea Service. Parts of the fou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s e-B/L service are as follows; It is well equipped with IT infrastructure and legal system. It also has more than 30,000 potential users who are already uTradeHub service users. The paper indicated several weaknesses of the current system such as global KPI issues, circul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s not only in the domestic market but also among economies,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Bill of Exchange. As resolution measures, the paper re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mutual recognition system of PKI among trade partner countries, setting up e-trade solution for small and medium companies, and special attention to raise users' awareness of the e-B/L service.

Key Words : e-B/L Korea, e-Trade, Bill of Lading, paperless trade, uTradeHub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